



이민/비자
이동찬 변호사

Q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조치

▶문 = 저는 20년 전에 미국으로 밀입국을 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려다가 한국에서 인터뷰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포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기를 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했다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245i 조항 같은 불

법체류 구제안의 혜택을 받지 않는 이상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밀입국을 한 경우 해외로 나가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해외로 나가는 순간 180일 이상 불법으로 체류하면 미국에 3년 동안 입국할 수 없고 1년 이상 불법으로 체류하면 미국에 10년 동안 입국할 수 없다는 이민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위의 입국 거절 이민법 조항 때문에 보통 출국 전에 미리 이민국을 통해 불법체류와 관련 사면을 신청하는데, 사면을 받으려면 영주권 신청자가 추방되면 시민권자 혹은 영주

권자 부모 또는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민국에 증명해야 됩니다. 사면 신청서는 심사기간이 길고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해외로 나가면 불법체류 외에 다른 결격사유로 이민 비자가 거절되어 미국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밀입국하였으므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 원래 사면을 신청하고 승인되면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하셔야 되는 경우지만 바이든 정부의 이번 행정조치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7월 18일에 발표한 새로운 이민 행정조치에 의하면 2024년 7월 17일을 기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고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라면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그의 자녀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자격조건 여부를 이민국에서 먼저 심사하고 승인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3년 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만 내년쯤 그 행정조치가 실행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의: (213)291-9980

사업체 상호등록 대행 & 공고 서비스

한인 커뮤니티 최초! 최다 건수 기록!

중앙일보가 하면 역시 다릅니다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가능

한인타운 중심
넓고 편한
무료 주차!

공중까지 한 자리에서 전문팀의 서비스를 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호등록 대상

1. 사업체를 새로 오픈했을 경우
2.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매매했을 경우
3. 상호등록 후 5년이 다가오거나 지났을 경우
4. 동업자가 빠지거나 새로 들어올 경우
5. 상호나 주소를 변경할 경우

4개 카운티 상호등록 서비스

- 가장 많은 카운티 상호등록 공고 서비스
- Los Angeles County (대행 + 공고)
 - Orange County (대행 + 공고)
 - San Bernardino County (공고 Only)
 - Riverside County (공고 Only)

Legal Notice Service

- Summon (소환장)
- Bid Notice (입찰 공고)
- Name Change (이름변경)
- Storage Lien Sales
- Police Permit (경찰공고)

LA 본사 (213)368-2597
690 Wilshire Pl, LA, CA 90005

OC 지국 (714)590-2500
6940 Beach Blvd. #D-410, Buena Park, CA 90621